

### 3. 2015년도 달라지는 주요 예산제도

#### □ 지방예산편성 기준경비 운영 강화 및 개선

##### ○ 예산의 성과관리제도 시행 기준 마련

- 「지방재정법」 제5조 개정으로 예산의 ‘성과계획서’ 작성이 의무화 되고, 자치단체의 ‘주요 재정사업 평가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
  - \* (제5조 제2항)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(‘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)
  - \* (제5조 제3항)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.  
(법 개정 시행일인 ‘14.11.29부터 적용)
-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훈령)」에 ‘15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‘성과계획서’ 시범 작성 및 ‘15년도 “주요재정사업 평가”기준 신설

##### ○ 민간이전경비(보조금) 기준경비 개정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예산의 편성, 심의위원회 구성, 사업자선정, 성과평가, 이력관리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
- 보조금 한도제 개선 등을 통해 보조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

##### ○ 일·숙직비 기준액 설정

- 자치단체별 근무여건,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% 범위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토록 개정
- 1일(야)당 5만원 이내

##### ○ 월액여비 기준액 인상

-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로 실제 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준액 인상(월 138,000원 → 월 150,000원)

## ○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액 조정

- 의원 1인당 2,000천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, 개인별로 정액 지급된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어 관련경비 산정방식 개선 필요
- “의원정수”를 기준으로 1인당 2,000천원을 기준액으로 하고,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% 범위내에서 자율 조정토록 개정

## ○ ‘기관운영업무추진비’ 기준경비 개선

- 경기도와 수원시의 소방재난본부장 등의 상향 조정된 직급(2급→1급, 4급→3급)에 대한 편성기준 명시 필요
- \*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(2→1급), 소방서장(4→3급), 수원시 안전기획조정실장(4→3급)
- 현행‘시군 적용군표’를 적용받지 않는 수원, 성남시 이외 인구 90만 이상(‘14.1.1일기준) 대도시인 용인시, 고양시와 통합 청주시를 추가

## ○ ‘정원가산업무추진비’ 기준경비 개선

- 공무상 요양기간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‘특별위로금’을 지급토록 「소방공무원법」 개정(공포 ‘14.6.11, 시행 ’14.12.12)
  - \*제14조의3(특별위로금) ①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‘특별위로금’은 직원의 사기진작 성격의 경비이므로, 현행 ‘정원가산업무추진비’에 편성할 수 있도록 편성기준 개정

## ○ ‘특정업무경비’ 지급기준 명확화

-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을 ‘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 전체를 전담하는 부서(전담팀, 전담계 포함)’로 명확히 규정